

#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(안) 공고

## □ 학칙 개정(변경) 사유

- ▷ 수업방법 다각화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권 보장.
- ▷ 한국장학재단 사후관리 결과 최소이수 학점 반영.

## □ 학칙 주요 개정사항

- ▷ 제3장 5조의 2 수업방법 규정 개정.
- ▷ 제3장 25조 ① 학기당 취득학점 규정 개정.

※ 세부사항 : 신 · 구조문 대비표 참조

# 신 구 문 대 비 표

규정명 : 예원예술대학교 학칙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수업방법)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.</p>	<p>제5조의2(수업방법)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<u>주말수업</u>, 계절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<u>현장실습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  <u>다만, 총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5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은 16~17학점으로 한다.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~19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② 승인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5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은 16~17학점<u>으로 하며,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 가능한 학점은 최소 9학점 이내로 한다.</u>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~19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동일-----                  -----</p>